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3년 4월 일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4월 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매년 11월 셋째주 목요일 실시로 수능시험일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있어, 감사기간 부족과 집중도 저하 초래
- 집행기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전 철저한 준비 필요
-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이 11월 11일까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적절한 검토 및 심사 기간 확보 필요에 따라 정례회 총 일수를 연장하여 정례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1차·제2차 정례회 회기를 합하여 “60일”을 “65일”로 변경함. (안 제7조)
-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“11월 8일”에서 “11월 1일”로 변경함.
(안 제8조제1항제2호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60일”을 “65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11월 8일”을 “1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회기)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<u>60일</u> 이내로 하며,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</p>	<p>제7조(회기) ----- ----- ----- <u>65일</u> ----- ----- ----.</p>
<p>제8조(정례회의 집회일) ①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 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2차 정례회 : 매년 <u>11월 8일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8조(정례회의 집회일) ① 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11월 1일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】

제7조(회기)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,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31.>

제8조(정례회의 집회일) ①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 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31.>

1. 제1차 정례회 : 매년 6월 8일
2. 제2차 정례회 : 매년 11월 8일

② 제1항의 집회일이 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